
**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장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**

2009. 04. 09

**행 정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신 승 관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마포구청장
- 나. 제 출 일 : 2009. 03. 31
- 다. 위원회회부 : 2009. 04. 02
- 라. 위원회 회부근거 :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

2. 개정이유

도로 점용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단 점용자에 대한 철거를 위하여 점용물의 정비 및 사후관리 전문업체에게 그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점용물의 운영자는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, 점용허가 갱신이 제한된 경우,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및 허가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물을 철거하여야 함. (안 제9조의3 제1항)
- 나. 구청장은 운영자가 점용물을 철거 기한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집행법」에 따라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철거 할 수 있음. (안 제9조의3 제2항)
- 다. 구청장은 점용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철거 전문업체 또는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관리 또는 철거 할 수 있음. (안 제9조의3 제3항)
- 라.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계약 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음. (안 제9조의3 제4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개정문안 : 따로붙임

2) 입법예고 : 입법예고(2009.03.05 ~ 03.25) 결과, 의견제출 없음

5. 검토결과

○ 제출경위

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 점용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단 점용자에 대한 철거를 위하여 점용물의 철거 및 사후관리 전문업체에게 그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안임.

○ 주요내용

- 가. 안 제9조의3 제1항에서 점용물의 운영자는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, 점용허가 갱신이 제한된 경우,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및 허가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물을 자진철거토록 규정하였고,
- 나. 안 제9조의3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운영자가 점용물을 철거 기한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철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다. 안 제9조의3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점용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철거 전문업체 또는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관리 또는 철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
- 라. 안 제9조의3 제4항에서는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계약 만료시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조례안 검토의견

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” 라고 규정되어 있어, 조례로써 노점상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바, 동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“서울특별시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”가 제정되면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조례와 연계된 개별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나, 현재 시급한 노점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은 노점상 관리에 관한 개별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시행하는 한시적인 조문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※ 관계 법령

지방자치법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도로법

제65조(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) ① 관리청은 반복적,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(積置物)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3조(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)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, 그 효력의 정지, 조건의 변경, 공사의 중지, 공작물의 개축, 물건의 이전,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제4조·제5조·제34조·제38조·제43조·제45조·제49조제3항·제52조·제58조·제59조·제62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자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·제34조·제38조·제59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